

연 간 예 약 약 정 서

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안성컨트리클럽과 _____ 회간에 연간
골프경기를 약정함에 있어서 “갑”인 골프장과 “을”인 상기회에 다음 사항을 성실
히 이행할 것을 약정함.

- 다 음 -

1. “갑”은 정해진 일자 및 시간에 “을”의 단체모임 경기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
간 배정을 한다.
단,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“갑” “을” 쌍방이 의논하여 편리한 날을 선택
하여 배정하기로 한다.
2. “갑”은 골프장 및 연회석 등 단체팀 수용에 따른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
한다.
3. “을”은 예약시간 30분 전까지 골프장에 도착하여 조 편성을 마치고 라운딩 준
비를 하여야 한다.
4. “을”은 사전 예약된 팀 수보다 초과하거나 축소되어도 아니하고 팀 수에 변동
이 있을 시는 약정일 15일전까지 “갑”의 승낙을 득해야 한다.
5. “을”은 매회 경기마다 식음료를 당 클럽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1인 기준
30,000원(팀당 120,000원)이상이어야 한다.
6. “갑”은 “을”의 예약된 팀 수 전원이 입장하고 본 약정사항을 다 지켰을 때에
는 총무 1인에게 회원대우를 해준다.
7. 연간 예약 약정은 당해 년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계기
간의 불참은 인정치 아니하며 동계(12월)기간은 사전 조정하여 “갑” “을” 쌍
방이 편리한 날을 선택한다.
8. 2011년도 그린휘는 골프장 사정에 따라 상향조정 될 수 있다.
9. 위 약정을 위반 시는 해당 월 다음 달부터 예약 약정이 취소됨을 “갑” “을”
인정하에 합의한다.

